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874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이석 의원, 김성화 의원

1. 제안이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출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환수조치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1인 자영업자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프리랜서”

마. 그 밖에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2. “출산여성”이란 출산한 여성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을 말한다.

3. “출산급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산여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자영업자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별로 출산급여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1인 자영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출산급여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에 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출산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출산여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인구전략기본법

제13조(일 ·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 ·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 · 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참고	비용추계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1인 자영업자등인 출산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급여를 지원함.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 제3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자) 1인 자영업자등인 출산여성을 130명[1]으로 매년 동일함을 전제함
- (지원금액) 900천 원[2]을 전제함

나. 추계의 결과 : 585,000,000원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간) 900,000원 * 130명 = 117,000,000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지출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117,000,000	585,000,000

작 성 자			
소속 및 직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명(연락처)	양 은 숙 (☎ 2048)

1)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 기준(2025.12.31.)
2)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금액은 15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단태아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그 차액인 90만원의 지원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주민등록 주소:	(휴대전화 :)
1-4. 출산자와의 관계 :	

2. 출산여성 정보

2-1. 성명:	2-2. 주민등록번호: -
2-3. 주민등록 주소:	(휴대전화 :)

3. 직업 정보(출산여성)

3-1. 지원대상 구분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3-2. 종사직종
[]외식업 []교육 []IT · 기술 []미술 · 의료 []보험 · 금융 []어학 []디자인 · 예술
[]운전업 · 배송업 []기타()

4. 출산구분

[]출산(출산일 :) []유산 · 사산 (유 · 사산일 :)

5. 출생 자녀 정보 (출산에 해당할 경우)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모두 기재

5-1. 성명:	5-2. 주민등록번호:
5-3. 주민등록주소:	

6. 지급신청계좌

급여 지급받을 계좌(출산여성 본인의 실명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급여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4. 통장사본 1부. 5. (다태아, 유 · 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보건소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여성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수)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7조(수급자격 조사)·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수집·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업무 처리(신청, 선정, 자격확인, 급여지급, 대상자 관리 등)
 - 수집항목 : 신청인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계좌번호(은행명)·출산일(출산예정일) 또는 유·사산일, 출생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출산자와의 관계
 - 보유기간 :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급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번호 고지사항

항목	수집·이용·제공 목적	수집·이용·제공 근거	제공기관
신청인·출생아·대리인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업무처리 (신청, 선정, 자격확인, 급여지급, 대상자 관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달성군청 달성군 읍·면·동 달성군보건소 고용노동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주민등록 사항 확인)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

유의사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으신 후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일(유산·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여성은 출산일(유산·사산일)과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자녀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달성군(주민등록상)에 하여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자격 확인	→	지급결정 통지 및 지급
신청인 (대리 신청인)		보건소		보건소, 읍면동(필요시)		보건소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신청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